第254回國會 (臨時會) 國會改革特別委員會會議錄 第 10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5年6月20日(月)

場 所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國會法 일부개정법률안
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 國會議員手當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4. 倫理特別委員會構成등에關한規則 일부개정규칙안

審査된案件

1. 國會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성・문석호・박재완 위원 서면동의) ····· 1
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성・문석호・박재완 위원 서면동의) ····· 1
3. 國會議員手當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성・문석호・박재완 위원 서면동의) ····· 1
4. 倫理特別委員會構成등에關한規則 일부개정규칙안(이윤성・문석호・박재완 위원 서면동의) ····· 1

(16시29분 개의)

○위원장 이윤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국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소위원회 합의사항 가운데서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는 부분, 그리고 조금 전에 있었던 위원장과 간사・소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을 정리해서 위원장과 두 분 간사가 서면동의로 위원회안을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

1. 國會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성・문석호・박재완 위원 서면동의)

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성・문석호・박재완 위원 서면동의)

3. 國會議員手當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성・문석호・박재완 위원 서면동의)

4. 倫理特別委員會構成등에關한規則 일부개정규칙안(이윤성・문석호・박재완 위원 서면동의)

(16시31분)

○위원장 이윤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윤성 위원, 문석호 위원, 박재완 위원이 서면동의하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이윤성 위원, 문석호 위원, 박재완 위원이 서면동의하신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이윤성 위원, 문석호 위원, 박재완 위원이 서면동의하신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이윤성 위원, 문석호 위원, 박재완 위원이 서면동의해 주신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해서 서면동의자를 대표해서 문석호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문석호 위원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개혁특별위원회는 2004년 6월 5일 제17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국회법 개정 등 국회운영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며, 예결위내실화를 위한소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등 3개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국회

법, 인사청문회법 등 67건의 국회관계 법률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3개 소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 중 이견이 없는 부분과 오늘 위원장·간사·소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추가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안을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입법절차 및 국회운영 일반에 관한 사항으로서, 첫째 소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회의록을 속기방식으로 작성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둘째 의안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위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적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의장은 그 의안을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의 제·개정 시 입법예고 단계에서도 그 입법예고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입법 검토결과를 정부에 통보할 경우 정부는 사후조치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원, 대정부관계, 국정감·조사 및 인사청문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첫째 의원의 불체포특권 남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처리시한을 명시하였고, 둘째 윤리심사안이 3월 내에 종료되지 아니하면 그 안건이 폐기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이 윤리심사 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 3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질문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증을 위하여 인사청문 대상을 모든 국무위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결산 심의제도에 관한 사항으로서, 첫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시 전문가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수 있도록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기로 하였고, 둘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회의진행 및 안건심사 등에 관한 운영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국회법에 두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법에서 국무위원까지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관련조문을 이에 맞추어 정리하고, 둘째 공직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시 첨부서류인 소득세 등 납부실적을 최근 3년간에서 최근 5년간으로 늘리고 여기에 체납실적 등을 포함시키도록 하였으며, 셋째 인사청문위원들이 공직후보자에게 보내는 질의서의 도달기한을 청문회 개최 4일 전에서 5일 전으로 하고, 공직후보자의 답변서는 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에서 48시간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부터 시행 중인 입법지원 및 정책개발비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에 관한 안건을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문위원회는 자문결과보고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자문위원회의 구성은 9인 이내로 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사·소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추가로 합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예산 등의 조치가 수반되는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제출 의무화, 둘째 전원위원회 심사기간 제한 폐지, 셋째 법률안의 위원회 상정 이전 최소계류기간의 확대, 넷째 의원석방요구안의 발의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윤성 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수 위원 말씀하세요.

○조승수 위원 방금 문석호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확인하려는데 조금 전 연석회의 과정에서 기타 추가로 논의된

사항 중에 정보위원회 위원을 교섭단체로 제한하는 부분을 폐지하기로, 말하자면 비교섭단체도 정보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저는 아까 확인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추가로 논의된 사항에는 미합의사항으로 나오는데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위원장 이윤성 다시 이야기해 주십시오.

○조승수 위원 현행 국회법에 보면 정보위원회의 위원을 교섭단체의 의원으로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민주노동당에서 이번에 개정안에 포함시켜 논의를 했고, 제가 아까 연석회의 논의 말미에 이 부분을 제안을 해서 문석호 위원님, 양승조 위원님, 김성조 위원님, 박재완 위원님, 저 이렇게 다 동의가 된 것으로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 왜 합의사항으로 들어가지 않았느냐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윤성 그것이 안으로서 합의된 것이 아니고 그 문제가 지금까지 소위원회에서 한번도 논의되지 않은 것 중의 하나이고 오늘 연석회의에서 이 부분은 한번 논의되는 것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까?

○문석호 위원 저도 그 회의에 직접 참석했었습니다마는 합의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조승수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해 주셔서 그러면 이따 전체회의 할 때 다시 논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윤성 예,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조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윤성 손봉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봉숙 위원 새로 합의하신 안 중에서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할 때 20인 이상에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으로 하셨는데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면 75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정당별로 이런 사태가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두 정당을 제외하고는 다른 세 정당이 다 소수정당인 상황에서 20명에서 갑자기 75명으로 증가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은 소수정당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4분의 1로 올려야 되는 것이 개혁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호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체포동의안과 석방동의안 처리에 관련되어서는 그동안 방탄국회가 계속적으로 열려온 적도 있었고 또 합법적 탈옥이다 하는 국민적 비판을 받을 정도로 국민들 눈에 비칠 때 우리 국회가 너무 특권적이고 반시대적인 그런 인상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열린우리당이 앞장서서 체포동의안의 처리시한도 명시하고, 72시간이내에 처리가 되지 않을 때에는 체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석방동의안의 요건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법안을 제안했고, 그동안 우리 소위나 전체회의에서 여러 차례 토론이 있었습니다. 논의결과 처리시한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로 하자, 또 석방요건을 강화하자는 두 가지가 오늘 연석회의에서 합의되었는데 그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다소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국회의원의 특권을 합리적으로 제한해 가면서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오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셨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이왕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72시간 이내에 석방동의안이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 석방에 동의한 것으로 하자는 저희 열린우리당안에 대해서도 오늘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거친 후에 우리 위원회의 합의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손봉숙 위원 발의한다고 그래서 그 동의안이 금방 통과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야기한 것과 같이 시한도 다시 못을 박았고, 이것이 국회본회의에서 다시 통과될 것이기 때문에 발의요건 자체를 강화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75인의 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는 것이 과연 의원의 특권을 포기하는 것인가? 이것이 개혁인가? 저는 그것이 그렇게 설득력 있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윤성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재완 위원님!

○박재완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저도 사실 오늘 합의된 것 외에 여당 간사님하고 논의를 해 본 결과 추가로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이 한두 가지 더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선 지금 합의된 개정안을 통과시키신 뒤에 다시 추가로 논의할 기회가 오는 것인지……

○위원장 이윤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합의된 부분을 의결하고 추가는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박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윤성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승수 위원께서 아까 문제를 제기했던 기타 추가로 논의된 사항에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비교섭단체 위원 선임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합의본 것은 아닙니다.

더이상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4건의 의안 중에서 국회법에 대해서는 쟁점별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과 두 분 간사가 서면동의로 제안하신 개정안 중에서 지난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이견이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이어서 나머지 이견이 없었던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합의된 사항이 4건인데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산 등의 조치가 수반되는 정부제출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제출 의무화가 추가로 오늘 연석회의에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전원위원회 심사기간 제한 폐지입니다. 그것도 합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법률안의 위원회 상정 이전에 최소 계류기간을 확대하자 하는 부분도 합의를 보았습니다.

네 번째, 의원석방요구안 발의요건을 강화하자 하는 것이 바로 배포해 드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제안설명 내용에 사실 미합의 유보사항도 오늘 위원장·간사·소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논의가 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상임위원회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에 관한 내용, 그리고 기획예산처의 소관 위원회 이관 문제, 그리고 소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실시 가능 문제, 공청회·청문회 개최요건 완화 및 양자의 규정 형식을 통일하는 문제 등이 일단 논의가 되었으나 미합의 유보사항으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의견을 정리하는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박재완 위원 제가 정확하게 의사진행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금 합의한 사항과 미합의 유보사항을 모두 함께 논의하는 것인가요?

○위원장 이윤성 지금 저희들 생각은 합의사항 4건하고 그다음에 미합의 유보사항도 한번 개진을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합의를 볼 수 있는 것이면 합의를 보고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해서 통과시켜서 의결했으면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재완 위원 그러면 기타 추가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윤성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박재완 위원 그러면 다 한 뒤에 나중에 법안을 한꺼번에 의결하시려고……

○위원장 이윤성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재완 위원 그러면 제가 합의된 사항 외에 기타 추가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인사청문 대상 확대가 되겠는데요. 지금 여당 위원 두 분께서 제안하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거나 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과 중앙선관위원에 대해서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하자는 것에 대해서 저는 원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취지는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입법·행정·사법 삼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써 엄격한 직무상 독립성이 요구되고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검증을 철저히 해서 적격자를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여당 위원들께서 반대를 하시지만 희망하건대 같은 논리로 입법·행정·사법 삼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장으로서 임기가 보장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과 방송위원회 위원장 두 분은 최소한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쳐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좀더 욕심을 낸다면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등 5개 기관장도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말씀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헌법

재판소 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그리고 방송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은 인사청문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또 여당과 야당 사이에 다소 이견이 있는 것이 예결위내실화를위한소위원회에서 재정제도의 변경 또는 신설을 하는 법률안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관련 상임위에서 예결위와 미리 협의를 거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었는데 그 구체적인 범위 등을 놓고 다소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을 포함해서 야당의 경우에는 예산뿐만 아니고 기금 그리고 회계 결산과 관련되는 법률안은 예결위와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협의를 거치되 경미한 경우는 제외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여당 측에서 기획예산처 소관 법률안만 예결위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자, 그리고 재정부담도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정하자는 수정제안을 해 주셨고 그 이견이 있어서 아직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야당의 안대로 되면 좋겠지만 저희들 고집만 부려 가지고는 합의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우선 차선이라도 선택하는 것이 알찬 예결산 심의를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당의 안대로 기획예산처 소관 법률안 그리고 상당한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라도 소관 상임위가 예결위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양보를 하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여당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합의를 해 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윤성 양승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양승조 위원 다름 아니고 자꾸 논점이 흐려질 여지가 있어서 그러는데 일단 여야 간에 간사에 의해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합의사항 먼저 통과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차례로 미합의 유보사항 및 기타 추가로 논의될 사항을 하나하나씩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윤성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습니다.

○이원영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윤성 이원영 위원님!

○이원영 위원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 바로 표결로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이윤성 예, 말씀하십시오.

○이원영 위원 위원장·간사·소위원장 연석회의 추가합의 내용 중에 전원위원회의 관련 규정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뜻은 상임위에서 소관 의안이 상정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아니할 경우까지 포함하는 부분을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했었는데 깊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마쳤다는 의미가 투표까지 해서 어느 정도 상임위가 의안을 통과시킨 내용이냐 아니면 심사만 마치고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도 심사를 마쳤다고 보느냐에 따라서 2항 규정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2항에서 전원위원회 요건으로 심사를 마쳤다는 의미는 제가 보기에는 의안을 투표까지 해서 결정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전원위원회를 요구하는 사람은 수정안을 반드시 미리 제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원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쳐서 표결을 거쳐서 확정된 것을 전제로 전원위원회로 가져가느냐 아니면 심사를 마치고 표결은 하지 않았지만 이 부분은 전원위원회에 올리는 것이 낫겠다고 위원들이 생각한 그런 사안도 전원위원회로 갈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이 취지에 따르면 반드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확정을 짓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오히려 기존의 전원위원회 규정보다 전원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 후퇴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윤성 박재완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박재완 위원 제가 당초 이것을 제안한 것은 아니고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미국의 예 등을 참조해서 수정안을 제안한 것인데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개정안은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의안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지금처럼 '심사를 거치거나 제안한'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그냥 심사 자체만 마치고 표결 등을 거치지 않은 채로도

전원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오히려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원위원회가 더 활성화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개정안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원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다른 위원회와 함께 본회의와 같은 정도의 범위에서 논의해야 될 사안에 한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자는 취지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 어떤 의안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없지만 본회의에 올린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의안이 있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원위원회가 아니고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열려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되어야 전원위원회를 거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전원위원회 자체를 좀더 알차게 하자는 취지이지 전원위원회 개최 자체를 속박하거나 제한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하는 것으로 제가 설명으로 들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직접 제안하셨기 때문에 혹시 보충설명을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장 이윤성 좀더 개념정의를 확실히 하자는 것인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유병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원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행조문에도 63조의2를 보시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에도 위원회 심사를 마친 의안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끝에 보시는 ‘위원회가 제안한’ 이 말은 오늘처럼 이렇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대안을 채택할 때 위원회가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님이 이걸 제안할 때 그때 제안을 의미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심의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그런 의안을 상정한 건 아닙니다. 이 법 63조의2는, 15대 말에 이 법을 만들 때 제가 직접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입법취지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행법 86조에도 보시면 법사위원회 체계·자구의 심사를 거칠 때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입안이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위원회의 제안과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심사를 마친’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86조의 용어정의와 통일을 기하는 것이고 위원회가 제안을 하든 심사를 마치든 어떠한 경우든 원래부터가 위원회가 심사를 마친 경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정리하고 명확히 하자는 뜻입니다. 바꾸자는 뜻이, 제한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손봉숙 위원 제가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 그래 놓고 바로 가서 “다만, 의장은 주요안건의 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동의를 얻어 전원위원회를 개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독소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국회의원 4분의 1이 동의를 해서 전원위원회를 어렵게 구성을 해 놓아도 교섭단체 대표가 싫다고 그러면 못 하는 거잖아요. 이런 조항들이 계속 따라붙어야 되는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유병곤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손봉숙 위원 누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 결정하시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수석전문위원 유병곤 그러니까 이 답변을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손봉숙 위원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합니다.

○위원장 이윤성 예, 의견으로 받아들이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전체회의가 있기 전에 열린 연석회의에서 합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합의를 좀 존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윤성 유승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승희 위원 전원위원회에 관련해서는 제가 대표발의를 했는데요, 원래 취지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원위원회의 소집요건을 강제하기 때문에 제한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삭제하는 안을 먼저 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원영 위원께서 “실질적으로 심사를 거치지 않다 하더라도 전원위원회 자체가 상임위원회, 단독 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없다” 이런 말씀까지 하신 상태였고, 그런데 정 의견이 충돌한다면 그 부분은 그냥 그대로 두되 전원위원회의 심사기간 제한

폐지에 대해서만이라도 합의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완전히 합의한 것은 전원위원회의 심사기간 제한 폐지이지 지금 제63조의2제1항에 있는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까지 저희가 합의를 본 것으로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윤성 그렇지 않아도 오늘 5항 부분이 삭제된 것은 여러분들이 내신 개정안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이와 함께 이 법안을 처리하면서 지금까지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이 좀 애매한 부분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수석전문위원팀들의 의견을 여기에 반영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봉숙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합의사항 1, 2, 3, 4를 1항, 2항, 3항, 4항 각기 하나씩 합의를 봐서 통과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윤성 예,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아까 양승조 위원도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같은 법률안이기 때문에 그 카테고리 속에서 단일안을 도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미합의 유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견의 일치를 본다면 같이 한번 위원회안으로 의결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가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계속됨으로 해서 초점이 좀 흐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합의된 부분에 대한 법률안부터 의결을 하고 나머지 추가 내지는 미합의 유보된 사항에 대해서도 재차 의견개진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동의하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첫째, '예산 등의 조치가 수반되는 정부제출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제출 의무화' 이 부분입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전원위원회 심사기간 제한 폐지' 부분입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손봉숙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윤성 박재완 위원부터 발언하시고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완 위원 저는 심사기간 제한 폐지에는 찬성을 하고요. 다만 손봉숙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1항 단서가 좀 독소조항이지 않느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를 요구했는데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 동의로 회의를 개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닌가" 하는 의견에 제가 심사를 할 때 이 부분을 간과했었는데 의견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타당하신 게 아닌가 해서 단서를 삭제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위원장 이윤성 우선 의견을 다 제시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의견을 듣겠습니다.

예, 이원영 위원님!

○이원영 위원 저는 지금 전원위원회의 제정취지가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하면 되지만 상임위 자체에서 본회의에 올리기 전에 상임위를 좀 보완하는 의미로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상임위를 뛰어넘는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안을 확정한 다음에 본회의로 올리자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제 생각에는 좀더 활성화시켜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하지 못하든가 원활하게 진행 못 할 경우에도 활성화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좀 여러 가지 정쟁이 될 소지도 있고 해서 반대하는 거라면 적어도 기존의 규정 정도는 유지해야지 오히려 개정안은 전원위원회를 더 축소시켜서 위원회 심사를 마친 경우에만 한정하고 또 위원회 스스로 이거는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 전원위원회에 넘겨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봉쇄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상임위원회가 활성화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한편 여러 의원들이 같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도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개정안은 오히려 후퇴라고 생각돼서 반대하고요.

전원위원회 단서조항 이 부분이 참 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정부분의 의원이 요구할 경우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바로 전원위원회에 올라가서 다 하는 게 타당할지 아니면 안정적인 이런 것을 위해서 '아,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끝나

는 것이 더 좋고 전원위원회에 올라가더라도 정쟁화될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것이고 오히려 그 부분은 본회의로 바로 넘기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교섭단체 대표들의 동의를 얻은 사안이라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단서조항도 의미는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성 또 이 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예, 유승희 위원님!

○유승희 위원 원래 이 전원위원회 심사기간 제한 폐지와 전원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제63조의2제1항에 '심사를 거치거나'라고 하는 이 조항이 단서조항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애초에 이것을 삭제하는 안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개정안은 '심사를 마친'으로 해서 현행 안보다도 오히려 개회요건을 더 강화시킨 그런 인상이 있고요.

물론 아까 수석전문위원 해석은 어차피 '거치거나', '마친'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같다라고 해석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표결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심사를 마쳤다고 하는 의미는 표결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치거나'라고 하는 거는 미표결한 사안이라도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친'으로 하면 더욱 더 강화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수정한 이것까지 단서조항으로 붙이게 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마친'으로 고칠 바에야 그냥 현행인 '거치거나'로 놔두는 게 좋다고 보고, 단서조항을 삭제하자는 손봉숙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윤성 또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두 가지 문제입니다.

제63조의2제1항 '심사를 마친'을 기존에 있던 내용대로 그냥 살리자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살리되 단서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인데, 이게 연석회의에서 합의본 내용하고는 많이 달라서 제가 지금 몇 분의 의견을 다시 여쭈어 보고요, 아니면 이것을 표결까지 가야 되는가 지금 절차상의 문제도 한번 논의하고 싶습니다.

○이원영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본 회의에서 전원위원회의 심사기간 제한 부분은 다 동의했습니다. 그 부분을 전제로 하고 '바로 통과할까요'라고 했을 때 제가 전원위원회 활성화만 얘기해서 이 부분이 확정이 안 됐던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야가 합의한 부분은 지난번 우리 합의를 뒤엎은 조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심의할 때 기간제한 폐지는 인정했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가기로 하고 오히려 전원위원회 활성화를 제약하는 이 개정안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부분을 표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윤성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제63조의2는 기존의 안대로 살리자 이겁니까?

○이원영 위원 지금 제63조의2제5항 삭제 부분은 다 동의했습니다.

나머지 지금 개혁특위 위원장·간사·소위원장 연석회의 추가 합의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윤성 여기서 한 분만 더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재완 위원 전원위원회 성격에 대해서 서로 근본적으로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전원위원회로 회부시킬 수 있다고 보는 의견과 그럴 수 없다는 의견으로 나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제가 듣기로는 후자가 맞다고 들었는데요.

이번에 제1항의 첫 문장을 정리한 것은 다만 제86조와 문구를 통일하는 것으로만 이해를 했는데, '거치거나'로 했을 때 만약에 표결을 거치지 않은 사안까지 전원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한다면 그건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조승수 위원 위원장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전원위원회제도를 활성화하는 취지라면 일단 단서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연석회의에서도 해석을 했는데 '심사를 거치거나'라는 이 표현은 표결까지 다 간 것으로 그래서 최종 보고서가 다 나온 형태임이 국회법에 명시가 돼 있다고 조항까지 설명을 했고 그리고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이라는 표현은 위원회의 대안이거나 이런 형

태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위원회 의결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마친’이라는 표현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를 했는데요.

어차피 전체적으로 전원위원회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라면 결국 핵심은 위원회에서 심사를 종료한 의안뿐만 아니라 심사 중인 의안도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자 이 취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둬서는, 아까 수석전문위원 설명대로 15대 때 만약 그런 입법취지로 이 조문을 결정했다면 지금 똑같은 조문을 놓고 해석을 달리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전원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개정을 하려면 ‘심사를 마쳤거나 심사 중인’이라고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윤성 대충 이 안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의견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해야 될 텐데요.

일단 제63조의2제1항을 기존대로 두는 것이 어떠냐, 아니면 조승수 위원의 제안대로 ‘심사를 마쳤거나 심사 중인’으로 고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낙순 위원님!

○김낙순 위원 우선 조승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심사 중이거나’ 하는 것이 들어가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상임위원회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마음에 안 든다, 너희들 심사 중지해라’ 하고 전원위원회로 가져올 수도 있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드리고요.

이 문건에 대해서, ‘심사를 거치거나’, ‘심사를 마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뜻에 동의하는데 심사를 거치면 그 위원회에서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보류를 했는지 의견 자체가 나옵니다. 심사를 마쳐도 그 의견에 나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반대한 의견도 전원위원회에 회부를 해 가지고 전원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지금 결론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치거나”, “마친” 이 부분은 똑같은 맥으로 해석을 하고 싶고요, 여기에다가 ‘심사 중인’ 것까지 집어넣는다면 전원위원회가 모든 상임위원회에 우선해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갑니다. 국회법 이 자체를 놓고 볼 적에 입법취지 자체에는 찬동을 하지만 가능하면 전원위원회를 열지 않고 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변칙적인 방법을, 최악의 상황을 예비해 놓은 것을 가지고 여기에다 문구를 더 추가해서 집어넣는다는 것이 원래의 국회 운영을 저해할 수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한 말씀만 더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안이 있는데 이견이 있는 건은 뒤에 토론하는 걸로 하고 이견이 없는 건 우선으로 의결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사진행발언 드립니다.

○위원장 이윤성 그것도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김낙순 위원의 의사진행발언대로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서 의결 다 마친 다음에 다시……

○박재완 위원 이것은 토론을 거의 다 했는데 마무리하시지요. 토론을 지금 다 해 놓고 또 뒤로 넘기면……

○위원장 이윤성 아니, 똑같은 얘기가 지금 되풀이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표결할 수도 없고요.

○박재완 위원 제가 볼 때는 의견이 모아졌는데요. 단서는 삭제하고 원안대로……

○위원장 이윤성 단서 삭제하는 것에 다 찬성했습니까? 단서조항 삭제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원영 위원은 분명히 반대를 했습니다.

○이원영 위원 단서조항은 교섭단체 대표들이 다 동의한 경우에만 개의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의가 있어야지 전원위원회를 여는 것이 아니라 전원위원회는 당연히 열리는 거고 개의하지 않으려면 여러 교섭단체의 동의가 다 있어야만 개의하지 않는 거니까 이 부분은 국회의 원활한 운영 이런 부분에…… 각 교섭단체의 동의가 있다면 전원위원회를 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으로, 반대로 동의가 있어야지만 연다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손봉숙 위원 마찬가지지요.

○이원영 위원 아닙니다, 마찬가지 아니지요.

어느 교섭단체는 ‘아, 이 부분은 전원위원회에 가야 되겠다’고 하고 어느 교섭단체는 ‘이건 전원위원회에 가면 안 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전원위원회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교섭단체의 동의가 다 있어야지만 열지 않을 수 있는

거니까 그 제한하는 경우는 극히 한정적으로 될 것이고 이 부분이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봉숙 위원 저 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낙순 위원께서 전원위원회를 안 할수록 좋은 거고 이거는 정말 불필요한 것을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전원위원회라는 거는 보다 참여민주주의, 토론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한 수단으로 제도화돼 있는 거지 이걸 꼭 안 하는 것이 좋은 의회 운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이라크 파병 반대 결의안을 토론하기 위해서 전원위원회를 성사시키는 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말도 못 합니다. 75명의 서명을 받는 것도 힘든데 그걸 교섭단체에서 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75명 의원의 역할이 아무 것도 아닌 게 되는데 이게 과연 민주적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회를 원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원활하게 의회가 토론하는 것을 방해하는 수단,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성 여기에서 정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충분히 각 항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선 효율적인 위원회 진행을 위해서 의결할 수 있는 것부터 의결하고 다시 되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법률안의 위원회 상정 이전 최소 계류기간의 확대 문제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네 번째, 의원석방요구안 발의요건 강화 문제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손봉숙 위원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문석호 위원 위원장님, 소수의견을 달아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보류하실 것인지 결정을 하시지요.

○위원장 이윤성 그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어떻습니까?

○손봉숙 위원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수결로 하셔서 통과시키……

○위원장 이윤성 우리한테 위임을 해 주시면 소수의견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봉숙 위원 위임은 하나마나지요.

그런데 위원장님, 오늘 다수결로 토론하는 것은 없고 전부 전원 찬성에 소수의견 달기로 갈 것인지…… 그 방침이 어떻게 되십니까?

○위원장 이윤성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손봉숙 위원 오늘 안건처리 방침이 전원 찬성, 만장일치에 소수의견으로 다실 것인지, 다수결로 하실 것인지 그 방침을 먼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성 아무래도 원칙은 다수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소수의견으로 첨부할지는 위원회 의견을 다시 묻는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석방요구안 발의요건 강화에 대해서 손봉숙 위원께서 이의가 있었습니다.

일단 반대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표결로 의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는 방법으로 의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석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윤성 말씀하십시오.

○문석호 위원 물론 표결도 좋습니다.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제가 16대부터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마는 과거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채택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여야 합의에 의한 결론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우리 국회의 오랜 전통이라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많은 특위 활동을 하면서 표결까지 했던 기억은 없습니다.

다만 여야가 '이 사안은 위원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합의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표결로 했던 적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표결로, 다수결로 하시겠다고 하실 것이 아니라 여야 간사와 또 두 분 비교섭단체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두 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표결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윤성 좋은 말씀이십니다.

합의 정신으로 이끌어낸다는 것은 좋으신 말씀

인데……

○손봉숙 위원 4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20명이 75명으로 갑자기 급증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다고 하고 저는 반대의견으로 남겠습니다.

(「소수의견으로 달아서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윤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과된 것으로, 의결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석방요구안 발의요건 강화는 손봉숙 위원의 반대 소수의견을 인정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간사·소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미합의 유보사항으로 된 4건 가운데 상임위원회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 번 재론하는 절차를 밟기로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연석회의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한 사항이고, 어쨌든 토론을 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봐서 우선 다른 추가 논의사항이라든지 더 제기할 부분들을 논의하고 이것은 마지막에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윤성 아닙니다.

아까 연석회의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고 오늘 전체회의에서 한 번 더 절차를 밟아서 충분한 의견개진을 하고 전체 의견을 묻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뒤로 미룰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두 분의 의견을 개진한 다음에 전체 의견을 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승조 위원님!

○양승조 위원 양승조 위원입니다.

전에 전체회의에서 마치 열린우리당 변호사 출신 위원들이 직역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제 밥그릇 챙기기를 한 듯한 발언의 모습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 국회개혁 특위에 계신 열린우리당 어느 분도 그런 뜻으로 발언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개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하자는 뜻에서 발언한 것이지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규정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이것이 표결에 갔을 때는 반대할 위원들이 별로 없을 것 같고, 다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법사위가 아니라도…… 또 법사위에서도 예를 들어서 의료소송 같은 것을 맡고 있는 경우에는 소송 진행 기간이 보통 2년이 넘습니다. 또 공동으로 선임해서 맡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법정에 나가서 소송 활동을 하기보다는 공동으로 선임계를 내고 보조 내지 함께 관여하는 정도인데 만약 이것을 국회법에 따라서 바로 시행하게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하면 수임 받은 사건을 정리할 시간이 없는 것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생각해 보고, 최소한 경과규정을 두어야 합리적인 개정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윤성 문석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석호 위원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님께서 함축적으로 표현해 주셨는데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우선 직무집행을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측면, 또 한편으로는 공익과 사익이 충돌될 때 공익에 우선해서 처신해야 된다는 부분에 관련해서 이견이 있는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바로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한 다음에 시민단체에서……

여기 시민단체에서 와 계십니까?

○위원장 이윤성 와 계십니다.

○문석호 위원 그래서 아주 비판적인 견해를 밝힌 것을 제가 봤고 또 일부 언론에서 무슨 직역이기주의, 반 개혁인 것처럼 치부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굳이 변호사·의사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많은 의원님들, 하다못해 조그마한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영리행위 금지에 해

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괄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문제가 앞으로 어느 쪽으로 논의가 전개될지 하는 우려를 저희가 했던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좀 신중하게 검토해 보자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률 조항이 어떻게 해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이 국회의 개혁을 바라고 또 국회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 도덕적 수준을 높이자는 데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국회를 새롭게 개혁한다는 취지에서 이 부분을 수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스스로 고통을 감내하는 쪽으로 결단을 내리는 것도 좋은 방안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반대토론을 했던 위원이 저를 비롯해서 세 분인데 세 분 공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다른 이견이 없을 듯 싶습니다.

위원장께서는 국회 개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윤성 문석호 열린우리당 간사께서 더 이상 여기에 이의를 달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원영 위원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윤성 말씀하십시오.

○이원영 위원 국회의원으로 세비를 받으면서 의정에 전념해야 된다는 부분은 취지에 동감합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도 다방면으로 있는데 가령 변호사의 업무를 예로 든다면 변호사 업무 중에서 공익과 관련된 업무도 있을 수 있고 또 각 정당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활동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하지 못하도록 이 법에 규율되어서는 곤란하겠다, 변호사업이 주는 공익적인 활동 부분들은 살리고 영리 부분에 한해서 제한하는 부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윤성 이혜훈 위원님!

○李惠薰 委員 이혜훈입니다.

사실 연석회의 결과의 미합의 사항으로 이 안건이 올라왔을 때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착잡했는데 지금 문석호 위원님하고 양승조 위원님, 세 분 공히 더 이상 이견을 철회하시고 합의처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 것으로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원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영리행위라는 것 자체가 공익 활동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영리행위라는 것 자체가 공익 행위를 배제하는 것이니까 그런 염려는 굳이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시간 쓰는 문제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겸직을 가지고 있어서 의정활동에 100% 전념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시간과 노력을 의원직이 아닌 다른 일에 들여야 된다면 저는 국민의 대표로서, 세비를 받아서 일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고, 만약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는 데에 시간과 노력을 100% 쏟을 수 있고 다르게 가지고 계시는 겸직에 전혀 시간과 노력을 안 쓰신다면 그런 것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원칙적으로나 무엇으로나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법 자체는 이론의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미 이 조문 자체가 그런 가능성은 배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윤성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조승수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윤성 말씀하십시오.

○조승수 위원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뒤에 하자는 얘기는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합의가 안 되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미루자고 했던 것인데 다행히 결단을 내려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관련 업무라는 부분이 가지는 추상성과 모호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국회 규칙이든 윤리규정이든 반드시 구체화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또 다른 논란과 해석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윤성 조승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이 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처리를 했습니다.

연석회의 합의사항 두 번째 전원위원회 심사기

한 제한 폐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견이 많으셔서 다시 한번 다루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국회개혁특위 위원장·간사·소위원장 연석회의 추가합의안을 보면 제63조2의1항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것으로 하자는 데까지는 대충 이해가 가고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유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5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합의를 보았습니다.

문제는 연석회의에서도 개진되지 않았던 문제가 하나 돌출했습니다.

뭐냐 하면 제63조2의1항의 단서조항입니다.

“다만, 의장은 주요의안의 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를 얻어 전원위원회를 개회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이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전원위원회 관계를 개혁적으로 처리하는 취지에 맞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조금 필요하겠습니다.

더 의견을 개진하실 분이 계십니까?

문석호 위원님!

○문석호 위원 전원위원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때 본회의의 한정된 시간 가지고 집중적인 토론이 어렵다 하는 사안에 대해서, 말하자면 본회의를 상임위식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 전원위원회입니다.

얼마 전에 파병동의안 처리할 때 저희가 이틀간 진지하게 토론했었습니다.

○손봉숙 위원 언제 토론을 했습니까? 막혀서 못했지요.

○문석호 위원 처음에 할 때, 16대 때 했습니다.

그렇게 한 적이 있었고, 전원위원회를 그동안 하루에 2시간씩 이틀 해서 4시간 열고 했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진행되어서 그 기한을 폐지하자는데 저도 찬성을 했습니다.

다만, 그랬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열 것이냐 하는 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국회의장이 결정해야 되겠지요.

아까 교섭단체 말씀하시면 항상 두 분 위원님께서는 개혁을 저희한테 요구하시고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의장 혼자 결정하기 어렵다면 교섭단체 대표의원하고 상의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틀이라고 하는 심사기간을 폐지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전원위원회를 열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그 일정까지 결국은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정해 놓지 않는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원위원회를 요구했을 때 무조건 연다고 하는 것이 꼭 적당하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원위원회는 어디까지나 본회의 심의를 보충하기 위한 보충적인 장치이지 상임위원회 중심 체제로 되어 있는 국회법상 극히 예외적인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손봉숙 위원님께서 단서 조항의 삭제를 요청하셨는데, 현실상 때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 해서 그 부분은 위원장·간사·소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제안한 대로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봉숙 위원 유승희 위원이랑 박재완 위원도 다 찬성을 하셨는데 어떻게 저한테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교섭단체 얘기만 나오면 두 비교섭단체를 주목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폭넓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윤성 그러면 두 분 좀 와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간사회의를 잠깐……

(위원장, 양당 간사와 회의)

아까 제가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시면 몇 분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받겠습니다.

있으십니까?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합의 사항으로 계류시키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조승수 위원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 협의사항으로 해서 미합의 사항으로 정리되는 것입니까?

○박재완 위원 합의가 안 됐습니다.

○조승수 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견 분포를 확인하든지 표결을 하든지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아까 문석호 위원님께서 운영의 효율을 말씀하셨는데 논리적으로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운영의 효율을 얘기하자면 차라리 우리가 삭제하기로 합의했던 기간과 발언시간 부분을 두는 것이 맞고, 의원 4분의 1로서 소집을 요구한 부분을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그렇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관한 문제지 효율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삭제되는 것이 맞고요.

두 번째, 지금 대충 넘어가 버리는 듯한 감이 드는데, 조항 앞부분의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부분을 ‘마친’으로 정리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분명히 해야 되고요.

○위원장 이윤성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조승수 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국회는 위원회 중심주의와 본회의 중심주의를 혼용해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충하는 의미에서 전원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대한 사안이거나 그 위원회의 의견과 전체 위원들의 의견이 다르거나 혹은 그 위원회가 고의적으로 안건 처리를 회피해서 보류시키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많지는 않겠지만요.

그런 경우는 심사 중인 안건에 대해서도 전원위원회를 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상임위원회와 본회의가 갖지 못한 기능을 보완하는 전원위원회의 원래 기능에 부합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윤성 지금 조승수 위원님께서 의견을 개진하셨는데요, 결론을 내면 이것입니다.

심사를 마치거나 심사 중인 의안도 그 대상으로 하자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이원영 위원님하고 유승희 위원님하고, 지금 조승수 위원님께서 같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고 싶은데요. 다른 분들, 이견 있으십니까?

지금 개정안이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석호 위원!

○문석호 위원 조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는데요.

상임위에서 심사 중인 의안에 대해서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자, 그런 취지 아니시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따질 때 그것도 안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거나 심지어 계류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긴급현안질문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토론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반드시 그런 사안을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참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은 하고 있지만 전원위원회는 본회의와 상임위를 연결하는 중간적인 제도적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예외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외적이 아니라고 보셔도 가능한 견해라고 생각은 됩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사안을 전원위원회로 넘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토론하는 것이 과연 우리 시스템상 적절한 토론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는 전원위원회 문제가……

사실 저희는 오늘 위원장님을 모시고 했던 연석회의에서 상당 시간 토론을 하면서 이 합의안이 잘 통과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견이 많고 하니까 이 문제는 오늘 무리하게 의견을 조정하시려고 하실 것이 아니라 장기 과제로 넘기고,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위원장 이윤성 이원영 위원님!

○이원영 위원 저도 국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각 교섭단체의 파행으로 인해서 어느 의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는다든가 의사진행이 원활치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전원위원회를 요구해서 상임위가 파행을 겪는 부분들을 전원위원회가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임위를 뛰어 넘는, 모든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은 오히려 전원위원회를 활성화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안을 얘기하면서 ‘위원회가 심사 중인’ 이렇게 막연하게 모든 부분을 다 전원위원회로 가져가기에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해칠 우려가 있어서 상임위 활동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를 들어서 심사 중인 경우 전원위원회로 갈 수 있도록 제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되어서 그 부분을 전원위원회로 가져갈 경우, 연관되어서 각 교섭단체 중에 어느 한 부분도 서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원위원회로 가면 좋겠다고 하는 경우에 전원위원회로 가는 부분들이 전

원위원회 요건의 완화와 더불어 결부되는 것이 상임위 활동과 교섭단체의 책임 정치 구현, 이런 부분에 연동되어서 현재 가장 현실적인 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윤성 여기에서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마는, 결론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합의된 부분만 의결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넘기는 것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63조의2제1항은 기존대로 두는 것으로 하고, 제5항은 삭제……

4페이지의 신설하는 제2·3항, 제4항, 제5항…… 제5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를 본 것으로 의결을 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원위원회 심사기간 제한 폐지 문제는, 제1항은 그대로 두고요.

○손봉숙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는 그것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논의가 많은 것은 그대로 두는 게 꼭 유보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안 고치고 가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윤성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유승희 위원 제5항만이라도 삭제하고 논의하면 할 수 있잖아요.

○손봉숙 위원 그리고 제1항의 경우 단서 조항이 현행으로도 문맥상 말이 안 되는 것이 "의장은 주요의안의 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하면 열어야지. '주요의안의 심의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회하지 않을 수 있다' 이래야 말이 되지, 왜 필요한데 안 엽니까? "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은 문맥상으로도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한 조항만 고치고 그만둔다는 얘기는 결국 반대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윤성 이 한 안을 가지고……

○손봉숙 위원 물러서도 진짜 이것은 이상합니다.

○위원장 이윤성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1항은 그대로 두고요. 제2항·제3항, 그리고 제5항을 삭제하는 부분은 합의 본 것으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원영 위원 제2·3항을 수정안으로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윤성 예, 제2·3항은 수정안으로 하고……

○유승희 위원 합의된 것만 처리한다 이거예요.

○이원영 위원 제2·3항은 놔두고, 제5항만 삭제하는 거예요?

○유승희 위원 제5항만 삭제한다……

○위원장 이윤성 제1항은 그대로 두고 제2·3항은 신설하고……

○이원영 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제5항만 삭제하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손봉숙 위원 저는 이 전원위원회 전체 안에 대해서 소수 의견 반대로 남겠습니다.

○이원영 위원 그전의 합의사항이 제5항 삭제였습니다. 나머지 손본 부분은 합의가 안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윤성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제5항 삭제만 합의 본 것으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끝냈는데요, 우리가 연석회의에서 기타 추가사항으로 논의된 사항 중에 여기에서 한 번 의견을 물어볼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박재완 위원 제가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위원장 이윤성 어떤 것입니까?

○문석호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이윤성 말씀하십시오.

○문석호 위원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의 당론은 아닙니다마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한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헌법재판관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아시다시피 헌법에 부여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선출하는 위원들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자질과 능력, 국가관, 가치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는 반면 그 이외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

는 위원에 대해서는 일체 검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날로 헌법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공정한 선거 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모처럼 구성된 국회개혁특위에서 이 문제가 합의 처리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한나라당 박재완 위원님께서 중앙인사위원장 등을 포함한 임기제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그 취지에는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마는, 사실 국무위원—총 19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무총리 빼고 18명이지요—에 대한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저희 여당 입장에서 여러 가지 부담을 느끼면서도 수용을 했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되면 과연 국회가 이를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요.

따라서 박재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체포동의안이 법정기간 내에 처리되지 않았을 때 체포 동의를 의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일정한 기간 내에 해야 한다는 시한만 정해 놓고 거기에 대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사실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국회가 법을 만들면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명확한 법률관계를 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또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을 스스로 제한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록 표결하는 문제도 역시 아까 제안드린 바와 같이 큰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성 박재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재완 위원 우리가 이렇게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 또 굉장히 많은 요구를 서로 일방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두 가지 제안했던 것, 하나는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 중에서 예결위와의 협의 의무화는 여당 안대로 기획예산처 소관 법률안대로 하겠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여당이 제안한 안을 야당이 수용하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쉽게 합의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제 생각에 그 두 건은 쉽게 합의를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두 건을 먼저…… 지금 저희들의 의결 정족수가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그 두 건을, 위원장님이 괜찮으시다면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의결을 해 주시고, 조금 논의가 될 수 있는 나머지 사항은 추가로 논의해 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이윤성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금 문석호 위원하고 박재완 위원이 추가로 논의를 희망하는 사항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자는 내용에 대한 박재완 위원의 의견개진인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안 하나하나를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한꺼번에 하니까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손봉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봉숙 위원 그것은 원래 합의하기를 원했었는데 사실 여당 쪽의 반대로 무산됐던 겁니다. 여당에서 다시 그 안을 제시하면 저희는 즐거이 받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봉숙 위원 인사청문회 대상을 더 확대하는 것……

○문석호 위원 인사청문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봉숙 위원 대통령 임명 중앙선관위원하고……

○문석호 위원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이요?

○손봉숙 위원 예, 그 2개 다……

○문석호 위원 저희가 반대한 적이 없는데요? 이 부분은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손봉숙 위원 합의가 안 됐으니까 이게 미합의 사항으로 와 있잖아요.

○문석호 위원 그것은 이렇게 된 겁니다.

저희가 소위에서 헌법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 같은 경우는 청문회 대상에 포함을 시키자고 제안을 했는데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헌법재판관

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보다 중앙인사위원장 등 7개 단체에 대해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됐던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손봉숙 위원 아무튼 찬성입니다.

○위원장 이윤성 그러면 박재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의견 좀 개진해 주십시오.

○박재완 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중복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행정·입법·사법 3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장이고 임기가 보장되는 중요한 직위에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철저히 검증해서 임명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헌법재판관과 중앙선관위원에 대해서 인사청문을 하자는 점에 대해서 적극 찬성을 하고요.

욕심을 내자면 기타 국가인권위원장, 방송위원장 등도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보지만 여당에서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 논의를 길게 해봐야 별 소득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제안을 축약해서 여당이 제안했던 헌법재판관과 중앙선관위원에 대한 인사청문을 수용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당 위원 두 분이 제안하신 안을 표결에 부쳐서 통과시키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윤성 정리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부분인데 요약하면요, 대통령 직접 임명 또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 물론 이에 앞서서 합의했던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실시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으로……

○전병헌 위원 잠깐만요, 아까 문석호 간사께서 설명하신 거하고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거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위원장 이윤성 같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전병헌 위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위원을 제외한……

○위원장 이윤성 대통령 직접 임명 또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원 이렇게 했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예결위 부분은 문석호 위원께서 의견을 개진하셨지요?

○문석호 위원 예,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작년 17대 국회를 개원하면서 한 달 정도 늦어진 이유 중의 하나가 예결위 상임위화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공청회까지 하면서 국회개혁특위에서 다른 문제를 다 젖혀두고 몇 달 동안 논의가 되어 온 문제이고요.

그래서 그 연관된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합의된 대로 오늘 처리하는 것이 옳겠고 나중에 더 깊이 있게 논의할 때 다시 한번 거론해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위원장 이윤성 박재완 위원님!

○박재완 위원 그게 아니고 양승조 위원님이 저 대신 말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여야 합의를 원래 했었고, 그러다가 사소한 문안에 있어서 여당 안대로 할 것이냐 야당 안대로 할 것이냐 해서 합의가 안 된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여당 안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여당 안으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여당이 제안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는 것이거든요.

○문석호 위원 예결위 상임위 등과 관련된 문제는 워낙 민감한 문제도 있고요, 나중에 교섭단체 대표 간에 다시 한번 협상을 통해서 해결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뒤로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재완 위원 이건 천정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법안 내용입니다.

○문석호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예결위 내실화를위한소위에 관여한 바가 없어서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소위에 관여했던 양승조 위원님의 설명을 개인적으로 듣고 보니까 지금 박재완 위원께서 제안하셨던 내용이 바로 저희 열린우리당에서 제안했던 내용과 전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취지는 어차피 예결위 상임위화를 중심으로 한 큰 쟁점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괄로 처리하는 것이 더 간명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박재완 위원께서 굳이 오늘 처리를 하자고 하면 저희가 반대할 이유는 없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윤성 위원님들 다 들으셨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기획예산처 소관에 속하는 법률안과 상당한 규모의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

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관 위원회는 미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봉숙 위원 새 안건을 자꾸 내는 도중이잖아요, 저도 안을 좀 내겠습니다.

저는 이번 국회 개혁 중에서 꼭 논의해야 될 사안이 몇 개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로 우선 ‘자동의사목록제’는 저희들이 꼭 채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안을 의사목록에 올릴 것인가 안 올릴 것인가를 교섭단체 대표들이 아니면 교섭단체 양당 간사들이 결정을 해서 올리는데 이것 자체가 대단히 비민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동의사목록제를 반드시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개인 의원도 하나의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개인 의원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의 완화 내지 폐지에 관한 건입니다.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몇 명으로 완화한다든가 몇%로 완화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성질의 것이 못 된다는 것 정도는 저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가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있었고 그것을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양당이나 4당의 주요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결의를 좀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러니까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에 대한 논의를 해 달라 이런 것을 우리 위원회 결의안으로 채택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네 번째로 오늘 논의가 됐지만 굉장히 미진합니다. 1년 동안 끌고 오다가 오늘 와서 시간이 없다고 자꾸 독촉을 하시는데 시간이 없어서 논의하지 못한 중요한 안건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논의하기 위해서 국회개혁특위 시한을 다시 연장할 것도 아울러서 건의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윤성 어떻습니까?

지금 의결정족수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죽 합의를 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의결을 하고 지금 손봉숙 위원께서 개진한 의견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까지 한 것을 일괄적으로 위원회안으로 만드는 안을 좀 의결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6일과 오늘 조문별로 합의한 사항을 국회개혁특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미 다 배포가 되어 있고요, 합의를 본 부분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한 법률안과 규칙안의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손봉숙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손봉숙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데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

조승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승수 위원 저는 아까부터 계속 다루어 주십사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님이 자꾸 지나가셔서, 정보위원회의 위원선임 제한규정 이 부분도 그렇고, 아까 연석회의에서 논의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을 배분하는 것을 현재 비교섭단체에도 배분해 줄 것을 확대하는 그 안도 같이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

니다.

○위원장 이윤성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제안된 의견을 정리를 해 드리면, 손봉숙 위원께서는 지금까지 소위원회에서 미심의가 된 자동의사목록제 도입에 관한 건도 우리 의견을 개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교섭단체 구성요건의 완화 문제도 우리 위원회 전체 안으로 강력하게 요구한 의견이 있었다는 것도 개진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개별의원 서류제출 요구 건도 도입하자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조승수 위원님께서는 이 전체회의 개최에 앞서 있었던 연석회의에서 정보위원회의 위원으로 비교섭단체 위원도 선임하도록 해 달라, 국회법에 정보위원회 위원은 12명으로 하고 교섭단체에서 지명된 위원만 선임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비교섭단체 위원으로도 선임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안, 그리고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배분을 원내정당으로 확대해 달라 하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손봉숙 위원 위원장님, 하나 빠졌습니다.

국회개혁특위를 연장하는 것도, 그러니까 국회개혁특위 연장 안과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는 여기에서 논의하자는 것보다도 이것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윤성 알겠습니다.

지금 손봉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제가 제시했던 안 외에 국회개혁특위 연장에 관한 건,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에 관한 것은 우리 개혁특위 전체위원회의 결의사항으로 건의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유승희 위원님!

○유승희 위원 유승희 위원입니다.

손봉숙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개별의원 서류제출 요구의 건, 그리고 자동의사목록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회개혁특위에서 지금 다 합의는 안 되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또 요구하는 안으로 올릴 것을 동의하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회개혁특위 기간 연장의 건하고 의장직속 자문기구로 국회개혁협의회와 같은 자문기구를 구성하는 안을 제안하자는 손봉숙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국회개혁특위에서 다루지 못한 여러 개 안건이 있습니다, 개정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옴부즈만 설치의 건이라든지 법사위의 자구심사라든지 체계심사 권한이 너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제한하자라고 하는 개정안들이 올라와 있는데 미처 다루지 못한 여러 가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개혁특위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도 아울러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윤성 또 다른 분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원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원영 위원 지금 손봉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동의사목록제도, 의원이 서류제출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동의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국회법 개정에 나타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서 결정하기에는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또 교섭단체 간에 안건으로 올라와 있지 않아서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이후에 국회법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서 좀더 나은 국회운영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개혁특위를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윤성 김희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희정 위원 저도 일단은 국회개혁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묶어서 논의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저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나눴던 얘기 중에서 법률로 반영된 이외의 논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명백하게 우리 개혁특위의 결의안 정도로 문건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소위 심사결과에서 보시다시피 소위에서 합의돼서 나온 내용 외에 각 개별 위원님들 간에 이견일 수도 있고 각 당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추후 논의 필요사항이라고 해서 더 알짜배기 항목들이 많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개별 국회의원의 서류제출 요구 건이라든지, 저는 겸임 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느끼고 있는 겸

임 상임위원회의 별도 국감기간 지정이 필요하다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런 별도 항목을 뽑아내는 것만 해도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미합의 됐다는 이유로 항목 자체가 사장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이 논의가 됐었다는 것을 별도로 정리하고 법안으로는 자구에서 충돌이 있었지만 실제 원칙적인 대의에 합의한 부분은 별도로 뽑아서, 예를 들면 제가 속했던 예결위내실화를위한소위원회의 경우에는 재정제도 변경의 건도 예결위와 사전 협의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에는 찬성했는데 자구 문제 때문에 법안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의 부분에서 합의가 된 내용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의 국회개혁특위 결의안으로 남겨서 이 위원회가 우리 위원 그대로 존속이 되든 다른 분들이 승계를 하든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이윤성 또 의견 있으십니까?

유승희 위원!

○유승희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다들 시간에 쫓기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산발적으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중간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합의 유보 사항’ 그다음에 ‘기타 추가로 논의된 사항’에서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까지 정리된 것은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짓는 수순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윤성 아주 반가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손봉숙 위원님께서 안으로 제시했던 자동의사목록제 도입의 건이라든가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의 건, 개별의원 서류제출 요구권 도입에 대한 말씀하고, 또 조승수 위원께서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비교섭단체 의원을 선임하는 문제,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배분을 원내 정당으로 확대해 달라는 건의의 건,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손봉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개혁특위의 연장에 관한 건의, 그리고 특히 교섭단체 구성의 완화에 관한 건의는 결의안으로 채택을 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으로 총 집약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전체회의 결의안으로 채택한 예보다는 여러분들이 건의하시는 내용을 결과보고서에 건의 내용과 의지를 강력하게 담겠다는 것으로 대신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요.

또 하나 특위가 계속되는 동안 미합의 부분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제시한 좋은 안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위가 계속 존속할지, 아니면 6월 30일로 그 생명을 끝내고 교섭단체끼리 협의하는 협의체에 계속해서 논의되는 안건으로 넘긴다는 내용으로 정리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떠신지요?

결의안보다는 결과보고서에 강력한 건의 내용을 담는 것이 더 저는…… 제가 본회의에서 할 것입니다.

○조승수 위원 조승수 위원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강력한’이라는 표현을 고딕체로 진하게 쓴다고 해서 그것이 강하게 될는지는 의문이고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의결한 국회개혁특위 관련한 법안이 의미 있는 내용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단 한 안건도 교섭단체가 제안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은 안건 중에 통과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수차례 제안도 드렸고, 예를 들면 특별결의로 특위활동을 연장하자는 것은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국회개혁국민협의회도 구성하자’, 그리고 ‘규칙이 없는 법률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국회규칙제정소위도 만들자’ 등등의 제안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또 정보위원회와 관련한 부분인데 국회법이 여러 가지 교섭단체 위주로 잘못 운영되고 있는 부분 중에 이런 야만이 어디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지역의 국민을 대표해서 헌법기관으로 선출되어 있는데 교섭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임위원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다니요? 저는 이런 부분을 몇 차례 안건으로 다루어 주고 이것을 처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장님이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계십니다.

아까 연석회의 때 분명히 위원장님과 저를 제외한 나머지 네 분들이 이 안에 다 동의하셨어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결국 이것을 합의사항으로 처리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운영하시는 것에 동의할 수 없고, 따지고 보면 지난번 전체회의와 오늘 특위 전체회의,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있었던 연석회의를 제외하고는 저는 의미 있는 토론을 우리 특위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다뤄본적도 없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다음에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두루뭉수리 넘기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 단지 특위활동 연장에 관해서는 그렇게 보고서에 강력한 형태로는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위 전체의 특별결의로, 의장에게 강력하게 건의하는 그런 특별결의로 다루시기를 요청합니다.

○손봉숙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윤성 제가 조승수 위원에게 답변을 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양당에서 합의하지 않은 사항이 합의된 것이 있습니까”라고 말씀하셨는데 100%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연석회의에서 다시 ‘미논의’ 부분에 대해서 재론을 했고 거기에서 합의를 보았던 것이 4건에 이르고요, ‘미합의 유보사항’ 중에서도 오늘 전체회의에서,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에 관한 건이라든가 기획예산처의 소관 위원회 이관 문제 같은 것은 뒤늦게라도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문석호 위원 기획예산처는 아닙니다.

○유승희 위원 기획예산처 소관 위원회는 합의가 안 되었지요.

○위원장 이윤성 예, 아닙니다. 기획예산처의 소관 위원회 이관 문제는 잘못된 발언임을 인정하고 취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위원회의 위원으로 비교섭단체 의원을 선임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조승수 위원님께서 “왜 다른 분들은 다 찬성을 했는데 유독 위원장만 반대를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박재완 위원한테도 확인했습니다마는 연석회의 뒤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그 문제를 재론한다는 데 합의를 본 것이지 그 내용에 찬성 합의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봉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봉숙 위원 지난 1년 동안 국회개혁을 하라는, 해야 된다는 것에 우리 자체 내에서 의지도 있었고 또 국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1년간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소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제가 교섭단체의 구성요건 완화에 대한 결의안을 하나 채택하자고 해도 단 한 분도 찬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두 교섭단체가 이렇게 기득권을 옹호하는 선에서 논의를 한다면 개혁특위의 의미가 뭔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완화하라는 것도 아니고 ‘완화하자는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것을 건의하자는 안조차도 한 사람도 동의를 안 한다면 1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했나 그런 생각도 하고 또 국회개혁특위가 공청회를 열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참석하셨습니다.

공청회 진술인 중에 네 분이 ‘교섭단체는 폐지되어야 된다. 교섭단체가 국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운영을 오히려 파행으로 몰고 가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논의가 그렇게 강력하게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단체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단 한 분도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이 또 바뀌어서 제가 교섭단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비교섭단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자신이 소속된 입장에서만 이것을 보지 마시고 국회개혁이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도 이것이 이 자리에서 결정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건의만 하자는 결의도 안 되는가, 우리는 이 교섭단체라는 것을 말도 못 꺼내는가, 그럼 국회개혁특위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저는 정말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고, 강력하게 건의하신다는데 강력하게 건의하시는 것은 표현으로 되는 것인지? 왜 결의조차도 못 합니까? 결의한다고 이게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동조하는 발언을 단 한 사람도 할 수 없다면 국회개혁특위가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했으며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국회를 개혁할 것인지 저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윤성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에 “강력한 건의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께서 전부 찬성을 해 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 결의안 채택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시간 의결정족수에 미달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결의안 채택을 가결할 수도 없습니다.

○손봉숙 위원 한 번 더 개혁특위를 열기를 건의합니다.

개혁특위를 오늘 반드시 끝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정족수를 지키도록 하는 것도 위원장님이 운영하셔야 되는 일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중대한 회의를 하는데, 전부 다 중요한 스케줄이 있지만 다 자리를 지키는데 물론 정족수가 안 되어서 논의를 못 한다면 정족수가 된 다음에 논의를 해 보기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윤성 유승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승희 위원 우선 '합의사항'이 있고, 지금 만약에 강력한 국회개혁특위의 권고안으로 들어간다면 '미합의 유보사항' 외에 또 다른 강력한 권고안으로 무엇 무엇이 들어갈지 그것도 사실은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기획예산처의 소관 위원회 이관에 대해서는 미합의된 것이지 그것은 강력한 권고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위원장님?

그렇다면 최종보고서를 냈을 때 '합의사항'과 함께 '미합의 유보사항' 그리고 '강력한 권고안'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뭔지 이 자리에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조승수 위원님과 손봉숙 위원님과 함께 계속 주장하는 바이지만 국회개혁특위의 기간 연장과 함께 자문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국회개혁특위 차원에서의 강력한 결의안을 의장님께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고안과 결의안을 분리해서 정리를 하는 안을 제안드리고 싶고요, 국회개혁특위 기간 연장 그리고 자문기구를 구성하는 안은 강력한 결의안으로 하고, 논의가 되었으나 아직 미합의된 사항 외에 합의는 안 됐지만 강력하게 권고할 수 있는 사항,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개별위원 서류제출 요구의 건이라든지,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비교섭단체 의원을 선임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것들을 권고안으로 구분해서 정리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태에서 정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위원님들이 퇴실하는 것에 대해서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다 막다가 갑자기 이것을 제지를 하지 않고 지금 결의안을 채택해야 될 상황에서 결국 결의안을 채택 못 하는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위원장 이윤성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양당 간사님 와 주십시오.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유승희 위원이나 손봉숙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건의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담는 것으로 하고 유승희 위원께서 굳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건의' 등을 구분해서 정리를 해 달라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양당 간사 간에 대화를 나눈 결과는 그것을 좀 위임해 주시면 우리가 처리를 하겠다 이런 의견으로 종합이 되는데, 말씀 주시겠습니까?

○손봉숙 위원 위임 못 합니다.

한 번 더 회의를 열기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윤성 또 다른 의견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조승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윤성 예, 조승수 위원님.

○조승수 위원 형식적으로 보더라도 예를 들면 오늘 양당이 생각했던 의안 처리가 다 끝났다 할지라도 특위 활동을 종료하려면 최종보고서를 의결해서 본회의 때 의장에게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과한 의안은 있지만 보고서라는 것은 개정되거나 폐지되는 법안의 배경과 최종적으로 결론까지 맺어서 완결된 형태의 최종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오늘 특위 활동을 종결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 위원회의 회의가 본회의 보고 이전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있어서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채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승희 위원 저도 최종보고서 채택하고 기간 연장 등에 대한 결의안의 논의를 위해서 한 번 더 회의를 열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반드시 전체회의에서 채택의 수순을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윤성 그런데요, 국회법을 보면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결로써 채택을 하는 과정이 전부 생략되어 있습니다. 촉구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서 전체회의

를 다시 한번 열어서 이것을 의결 사항으로 해 달라 하는 것은 현행 국회법 상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개진해 주신 의견을 보고서에 담겠다, 강력한 의지가 담긴 보고서에 담겠다 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 밖의 것은 여야의 간사들에게 위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위원장의 정리된 말씀입니다.

○유승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윤성 유승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승희 위원 최종보고서 채택에 관해서는 국회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의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그리고 위원장님이 그 보고서를 채택하기 전에 일단은 소속한 모든 위원들한테 보고서 안을 회람시킬 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건의드리는 것은, 기간 연장이나 자문기구 구성에 관한 건은 국회개혁특위의 제안 사항으로 결의를 해서 의장님께 보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일단은 결의안을 제출해서 의장께 제출하고, 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들한테 회람을 해서 최종적으로 위원장님이 의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윤성 여기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2항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 및 관련위원회의 의견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서에 모든 내용이 다 담기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위임해 줄 수 없으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 의원 그게 소수의견입니까?

○위원장 이윤성 아니지요, 그것은 권고, 건의 내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보고서에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손봉숙 위원 여야 간사들에게 위임을 하면 비교섭단체의 의견은 반영할 길이 근본적으로 차단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윤성 박재완 위원님!

○박재완 위원 비교섭단체 위원 중에 대표위원 한 분도 같이 참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연석회의처럼 그렇게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윤성 조승수 위원님!

○조승수 위원 현실적인 처리는 참여를 할 수도 있고 의견을 개진해서 담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회의에서부터 특위 연장에 관한 부분을 주요 안건으로 위원회에서 다뤄 줄 것을 이미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누차 드렸지만 오늘 주요 안건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교섭단체 위주로 합의한 사항만 처리하고 끝내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체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참으로 동의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애초에 얘기했던 그런 특별한 우리 위원회의 결의 이 부분이 담겨지지 않는다면 제 안건이, 아예 성원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유회되었음을 기록으로 남겨 주십시오.

○위원장 이윤성 저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호 간사님!

○문석호 위원 지금 그 문제는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조승수 위원님께서 "유회됐다"…… 유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결의할 정족수가 안 돼서 결의를 할 여건이 안 됐다는 정도이지 그것을 유회라고 표현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계신데요, 국회개혁특위 기간 연장,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결의안을 낸다고 그래서 얼마나 구속력이 있는지도 의문스럽고요. 자문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는데 그것이, 국회의장이 헌법상 국회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또 본인 스스로 권한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의안을 냈을 때 의장께서 받아 줄지 하는 것도 좀 의문스럽고요.

국회개혁특위 활동에 대해서 거의 마무리 하는 단계에 와서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사실 저희가 17대 국회 들어서 뭔가 새롭게 해 보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마는 실제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요, 우리 개혁특위 활동도 작년 예결위 상임위화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서 별로 활동을 못 한 것 같고, 또 회의할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 스스로를 비판했어요, 이 특

위 활동을. 그러다가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계속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엄청난 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 생각은 특위 활동과 관련해서 이제 저희 차원에서는 마무리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교섭단체에 관련되어 계속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 정책위원이든, 아니면 정보위에 비교섭단체가 참여하는 문제든 크게 보면 교섭단체 요건을 어떻게 완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 결단에 속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운영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더 지속적인 논의를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교섭단체, 참 저도 제 스스로 얘기 꺼내기가 뭐해요, 하도 질책을 들어 와서. 교섭단체가 어차피 국회에 구성이 돼 있으니까 대표들께서 만나셔서 상의하시는 쪽으로, 우리 국회 개혁 활동이 연장되거나 또 지속적인 활동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아쉽지만 우리 국회개혁특위 활동은 이 정도로 끝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저희 나름대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봤지만 합의안을 도출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아주 작은 문제라고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하나하나 참 고민 끝에 이렇게 만들어 내고 했는데 앞으로 6개월간 활동을 더 한다고 그래서 우리 힘으로 얼마나 더 내놓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위원장께서는 위원장께서 여러 차례 언급하신 바와 같이 그런 강력한 의견 개진, 건의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서에 담아서 저희 양당 간사뿐만 아니라 비교섭단체 위원님들, 또 오늘 그 안을 제시해 주셨던 해당 위원님들께 초안을 좀 보여 주시고 동의를 얻어서 우리 활동의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오늘 회의는 이런 정도로 마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윤성 문석호 간사님 고맙습니다.

저도 지금 방금 그 절충안을 제시하려고 그랬는데요. 보고서 작성 결과를, 비교섭단체 대표 중의 한 분도 참석을 하게 하겠고요, 또 의장한테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제안하신 위원들에게 한번 회람하는 기회를 갖겠다는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떨지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으로 결론을 내는 것으로 하고요, 끝내기 전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위 활동을 마치면서 그동안 개혁특위에서 수고해 주신 두 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외부 정치 환경의 장애도 있었고 국회개혁특위 스스로도 심도 있는 검토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모두 인내해 주시고 힘을 모아서 그래도 소정의 성과를 보여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개혁특위 결과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몇 가지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었고, 기타 국회 운영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체적인 처방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의 특위 활동의 성과가 4개의 법률안 및 국회규칙 제안이라는 형태로 나왔습니다마는, 위원장은 국회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활동경과, 소위원회별 합의사항 및 미 합의사항, 오늘 제안된 의안 등 특위 활동의 전체적인 결과를 정리해서 의장에게 보고함으로써 향후 국회 개혁을 마무리 하는 데 최대한 기여하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위원님들의 건승을 빕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을 보좌하느라 애써 주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산회)

○出席委員(16人)

김 낙 순	김 성 조	김 희 정	노 현 송
문 석 호	박 재 완	손 봉 숙	양 승 조
유 승 희	이 상 민	이 원 영	이 윤 성
이 혜 훈	전 병 헌	정 두 언	조 승 수

○請暇委員(1人)

박 기 춘

○出席專門委員및立法審議官

수 석 전 문 위 원	유 병 곤
전 문 위 원	김 대 현
입 법 심 의 관	문 강 주
입 법 심 의 관	류 환 민